

2017. 4. 12(수)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 사항	기준 일	관계법조
	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\$4, \$60의2①, 규\$2①②
	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규\$51①②, 규\$26의2③
'16. 12. 13부터	화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\$60의2①
'16. 12. 30부터	금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\$60의2①
'17. 1. 12. 까지	목	각급선거관리 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리·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)까지	법\$60②
1. 29부터	일	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군의원 및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	법\$60의2①
2. 11부터 4. 12까지	토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전 60일부터 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	법\$86②
3.13까지	월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	선거일전 30일까지[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]	법\$53②③
3. 21부터 3. 25까지	화토	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	법\$37, 규\$10 법\$38, 규\$11 법\$65⑤
3. 23부터 3. 24까지	목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	법\$49, 규\$20
3. 29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\$64②, 규\$29④
3. 30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\$33③
3. 31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\$65⑥, 규\$30⑤ 법\$64②, 규\$29②⑤
3. 31에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\$44①
4. 2까지	일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\$147⑧ 법\$65⑥, \$154①⑤, 규\$77 법\$65⑥, \$153①, 규\$76
4. 7부터 4. 8까지	금토	사전투표소 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\$155②, \$158
4. 12	수	투표 (오전 6시 ~ 오후 8시) 개표 (투표종료후 즉시)	선거일	법 제10장 법 제11장
4. 24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청구	선거일후 10일까지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	법\$122의2①, 민법\$161 규\$51의3①
5. 12까지	금	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·지출보고서 제출	선거일후 30일이내 선거일후 30일까지	법\$57①, 규\$25① 정금법\$40①
6. 11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이내	법\$122의2①, 규\$51의3②